

##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(TBT)

### 적용범위 (제9.2조)

- 양국간 상품 무역에 직·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 정부기관(예외 가능)의 모든 표준·기술규정·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·채택 및 적용
  - 상기 적용 대상의 개정과 대상품목 범위의 추가 등도 적용 범위에 포함
  - ① 정부기관이 자신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 규격 및 ② SPS 조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

### 적합성 평가기관 인정시 내국민대우 (제9.5조제3항)

- 각 당사국이 상대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 또는 승인하거나 면허를 부여하거나 달리 인정(이하 "인정")하는 경우, 자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기관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
  - 당사국이 자국 영역에서의 특정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하면서 그 기술규정이나 표준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,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시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도록 함.

## 통신분야 MRA (제9.5조제5항)

□ 통신분야의 상호인정협정인 APEC-TEL MRA 2단계 이행을 위해 가능한 조속히 조치를 취하기로 함.

※ APEC-TEL MRA

- 정보통신기기분야 적합성평가결과의 상호수용을 위하여 APEC 회원국가간 체결한 상호인정협정
-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단계인 Phase I과 제품인증서 상호수용 단계인 Phase II로 구분되며, 한미 양국간에는 Phase I MRA가 이미 체결된 상태('05.5)

## 투명성 (제9.6조)

□ 표준·기술규정·적합성 평가절차 관련 법령 등을 제·개정하는 경우 국내의 이해관계자(업계, 단체, 개인 등) 외에 상대국 이해관계자도 비차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

■ 상대국에 통보된 기술규정안 등에 대해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간을 부여

※ 우리는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(행정안전부 예규 제385호) 제정을 통해 기술규정 등에 대한 60일 입법예고 기간 부여

■ 제·개정하고자 하는 기술규정안 및 최종본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보장

※ 미국 관련 웹사이트 : [www.federalregister.gov](http://www.federalregister.gov),  
[www.regulations.gov](http://www.regulations.gov) 등

□ 지방정부의 기술규정 등도 상대국 통보대상으로 규정

■ WTO TBT 협정상 지방정부 기술규정 등의 통보에 추가하여, 국제표준과 합치하는 기술규정도 상대국에 통보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

##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위원회 (제9.8조)

### □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(TBT) 위원회의 주요 기능

-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TBT 사안을 신속히 처리
-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·개선에 대한 협력 증진
- 상대국에 의해 지정된 분야에서 그 상대국영역의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요청에 대한 검토 원활화

### □ TBT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임시 작업반을 설치하여 운영 가능

- 이러한 작업반에는 비정부기관의 전문가나 이해당사자 포함 가능